

##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교통정책과

제정 1996 · 3 · 1 규칙 제 55호  
개정 1996 · 12 · 28 규칙 제 90호  
개정 1997 · 8 · 25 규칙 제112호  
개정 2009 · 2 · 24 규칙 제386호  
(제명 개정 포함)  
일부개정 2014 · 9 · 12 규칙 제520호  
(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)  
일부개정 2015 · 8 · 10 규칙 제559호  
일부개정 2015 · 11 · 26 규칙 제574호  
일부개정 2018 · 6 · 29 규칙 제626호  
일부개정 2022 · 11 · 11 규칙 제737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 · 8 · 10>  
[전문개정 2009 · 2 · 24]

**제2조(주차요금의 징수방법)**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 <개정 2009 · 2 · 24, 2015 · 8 · 10>

1. 주차시간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: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(동전)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이용자가 직접 투입하게 함
2.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: 시장이 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미리 구입하여 자동차의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함
3.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: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정하는 주차표를 교부하여야 함

**제3조(주차요금의 산정기준)**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. <개정 1996 · 12 · 28, 1997 · 8 · 25, 2015 · 8 · 10, 2018 · 6 · 29, 2022 · 11 · 11>

1.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. 다만,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

##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

는 바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### 가. 노상주차장

- 1) 평일 :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
- 2) 토요일 :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
- 3) 일요일·공휴일 : 무료

### 나. 노외주차장 : 전일 24시간

2.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할 때에는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투입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
3.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할 때에는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자동차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
4.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할 때에는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의 시간으로 함

**제4조(주차권)**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권을 발행하여야 하며,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주차권판매소를 지정하여 주차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다.

③ 주차권 판매소는 이용자가 주차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인근의 장소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주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의 위탁받은 자에게는 시금고에서 주차권을 액면가의 8퍼센트를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한다.

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원에게 주차권을 직접 소지하게 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주차장관리원이 판매하는 주차권은 초과 주차분에 한한다.

**제5조(직인의 신고)** 관리 수탁자는 사용할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업무개시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노상주차장의 구획선)**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

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, 직각주차, 사각주차(사선주차)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, 별표 1에 의하여 백색실선으로 구획한다. <개정 2009·2·24>

**제7조(노외주차장의 표시등)**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표시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
2. 주차장표지판
3. 이용자에 대한 안내표지판

**제8조(노외주차장의 관리)**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주차장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.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주차장의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의 방지
2. 「주차장 관리 규정」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의 금지
3.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

**제9조(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)**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시금고 또는 이천시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·2·24>

**제10조(보조금의 신청)** ①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가주차장 설치 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외주차장 설치통보, 건축허가(신고) 또는 공작물축조신고 등을 득한 후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 [별지 제5호서식] 1부
2. 자가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[별지 제6호서식] 1부
3.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1부
4.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 [별지 제7호서식] 1부

##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

### 5.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[별지 제8호서식] 1부

[본조신설 2009·2·24]

**제11조(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한도)** ① 시장이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시장이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액은 해당 주차장 건설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09·2·24]

**제12조(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결정)** ① 시장은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.

② 시장은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요건, 보조금액(한도액), 제출서류의 적정여부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한다.

③ 시장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가지 외곽지역 등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.

[본조신설 2009·2·24]

**제13조(보조금의 지급)** ①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주차장설치완료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주차장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주차장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주차장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9·2·24]

**제14조(감독)**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9·2·24]

**제15조(보조주차장의 관리)**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 건립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

제10호서식을 비치하고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·관리한다.

[본조신설 2009·2·24]

**제16조(과징금의 부과)** 「주차장법」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되,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09·2·24]

**제17조(관리규정)**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·2·24]

**제18조(준용)**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예에 의하고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8·10>

[본조신설 2009·2·24]

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·12·28 규칙 제90호>

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·8·25 규칙 제11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·2·24 규칙 제38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9·12 규칙 제520호,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8·10 규칙 제55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15·11·26 규칙 제57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6·29 규칙 제626호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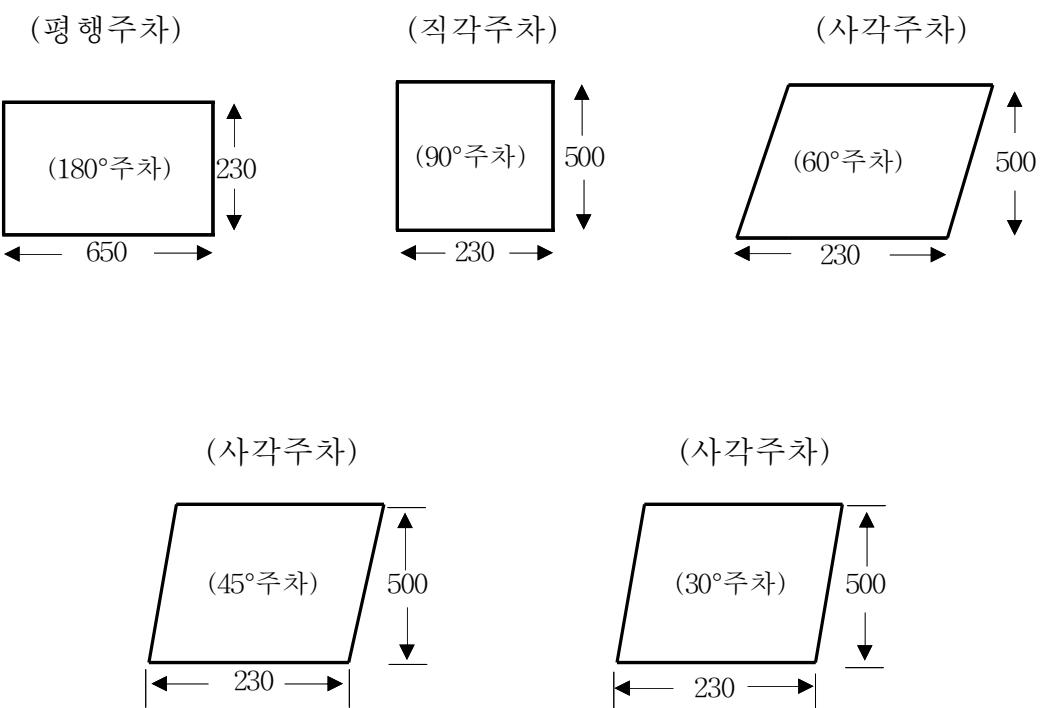
부칙 <2022·11·11 규칙 제73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# 노상주차장의 구획 표시 방법

(단위 : 센티미터)



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

[별표 2] <신설 2009·2·24>

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기준표(제11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설 치 형 태	보조금 지원액
단독 및 다세대 주택	1. 화단 · 바닥 · 기타 공사후 주차장 설치시	800,000
	2. 담장철거 · 개조후 주차장 설치시 (직각주차)	1,200,000
	3. 담장철거 · 개조후 주차장 설치시 (평행주차)	1,500,000
	4. 대문철거 · 개조 후 주차장 설치시	1,700,000
	5.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· 개조 후 주차장 설치시	2,000,000
	6. 주택 건물의 일부(반지하 등)를 개 조하여 주차장 설치시	4,000,000
	7. 내 집 주차장 설치후 전신 · 통신 주 이설시	2,000,000
공동주택 (다세대주택 제외)	공지를 이용하여 개방형태로 새로 설치시	600,000

비고

- 상기 형태의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은 1면 설치당 기준임
-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경우 1면당 300,000원 증액 지급  
(단, 최대 지급금액은 4,000,000원 이하임)
- 공동주택(다세대주택 제외)에 개방형태의 주차장 신규 설치시 면당 600,000원 지  
급(단, 최대 지급금액은 30,000,000원 이하임)
-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 기준표상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(사업  
비 정산 금액만 지급)

[별지 제1호서식]

주 차 권 의 서 식

NO	
주 차 권(원부)	주 차 권(영수증)
차량번호 :	차량번호 :
주차일시 : 20 . . . .	* 주차요금의 징수기준
주차시간 :      부터      까지	주차일자 :
주차요금 :      원	2시간까지 30분당 :      원 2시간초과분부터 30분당 :      원
	주차시간 :      부터      까지 주차요금 :      원
	* 주차중인 차량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	이      천      시      장
	이천시공영주차장 제      구간      관리수탁자      인

|----- 5센티미터 -----|----- 10센티미터 -----|

### [별지 제2호서식]

## 직 인 의 인 영 신 고 서

1. 사업장위치 :
  2. 사업명칭 : 이천시 공영주차장 제 구간 관리
  3. 직인의 인영

A large, empty rectangular frame with a black border, occupying most of the page.

위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직인의 인영을 「이천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## 신고인 이천시공영주차장 제 구간

## 관리수탁자 (인)

이천시장귀하

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3호서식]

주차장설치비용 납부통지서(은행용)		
발행번호		이 천 시 주 차 장 특별회계
납 부 자	성명	
	주소	
납부금액		
납부기한		
납부장소	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	
세입과목	주차장관리수입 사업외 사업대행수입	
<p>「주차장법」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 물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
수납인		
이천시장(인)		

주차장설치비용 영수필통지서(시청용)		
발행번호		이 천 시 주 차 장 특별회계
납 부 자	성명	
	주소	
납부금액		
납부기한		
납부장소	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	
세입과목	주차장관리수입 사업외 사업대행수입	
<p>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.</p>		
수납인		
이천시장 귀하		

주차장설치비용 영수증(납부자보관용)		
발행번호		이 천 시 주 차 장 특별회계
납 부 자	성명	
	주소	
납부금액		
납부기한		
납부장소	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	
<p>위와 같이 영수합니다.</p>		
수납인		
이천시장		

## [별지 제4호서식]

과징금납부통지서 (은행용)		
발행번호		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
납 부 자	성명 (대표자)	
	주소 (회사명)	
납부금액		
납부기한		
납부장소	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	
세입과목	주차장관리수입, 사업외수입,과징금 및 과태료	
<p>「주차장법」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
이천시장(인)	수납인	

과징금 영수필통지서 (시청용)		
발행번호		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
납 부 자	성명 (대표자)	
	주소 (회사명)	
납부금액		
납부기한		
납부장소	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	
세입과목	주차장관리수입 사업외수입,과징금 및 과태료	
<p>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.</p>		
은행		
이천시장 귀하	수납인	

과징금영수증 (납부자보관용)		
발행번호		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
납 부 자	성명 (대표자)	
	주소 (회사명)	
납부금액		
납부기한		
납부장소	이천시금고및 관내금융기관	
<p>위와 같이 영수합니다.</p>		
은행		
이천시장	수납인	

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5호서식] <신설 2009·2·24, 개정 2014·9·12>

자가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(제10조 관련)
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전화번호	자택: 휴대폰:
주차장현황	주차장 위치				
	주차장 형태	대문, 담장(평행, 직각, 이웃) 공지, 기타( )	규모	m <sup>2</sup> 대	
	공사기간	20 . . . ~ 20 . . .			
	완료(예정)일	20 . . .			
사업비합계	천원	보조금	천원	자기자본부담액	천원
상기와 같이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 등을 개조(철거)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.					
20 년 월 일 신청인 (인)					
이천시장 귀하					
첨부서류	1. 주차 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면적 2.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: 상대편 동의서				

[별지 제6호서식] <신설 2009·2·24>

## 자가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(제10조 관련)

## 1. 사업의 내용



## 2. 보조사업의 추진기간

- 사업기간 : 20 . . . . ~ 20 . . . .
  - 사업내용 : (예) 내 집안 주차장 설치

### 3. 보조금액 및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성명	주소	사업비			비고
		계	보조금	자기자본부담액	

#### 4. 보조금의 사용방법

(예)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(철거)하여 내 집안 주차장설치 사업비로 사용

## 5. 보조사업의 효과

(예) 내 집안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## 이 천 시 장 귀하

##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5·11·26>

##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서(제10조 관련)

## 1. 신청인

- 주 소 :
  - 성 명 :
  - 생 년 월 일 :
  - 전화번호 : 자택 휴대폰

## 2.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

- 주차장 설치위치 :
  - 대지면적 :  $m^2$
  - 주차장 설치개요 : 연면적  $m^2$ (      대)      총

### 3. 신청인의 재산상태

- 총 자산 :
  - 총 부채 :
  - 자기자산 :

#### 4. 설치자금 소요내역

- 용도 :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자금
  - 총 소요액 : 금 원
  - 자기 자금 : 금 원
  - 보조 신청 : 금 원

※ 첨부서류 : 설치자금 산출기초내역서 및 설계도서

「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## 신청인 (인)

## 이 천 시 장 귀하

[별지 제8호서식] <신설 2009·2·24>

민영노외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(제11조 관련)

1. 주차장 설치 위치 :

2. 대지면적 :

3. 주차장 명칭 :

4. 주차장 형태

자주식 주차장 : 지하식, 지평식, 건축물식(공작물식)

5. 주차장 규모 : 연면적              m<sup>2</sup>(              대)              층

6. 노외주차장 건축허가(신고) 및 공작물축조신고 일시 : 20 . . .

7. 노외주차장 착공 예정일 : 20 . . .

8. 노외주차장 준공 예정일 : 20 . . .

9. 노외주차장 공용개시 예정일 : 20 . . .

10. 보조금의 사용방법

11. 사업효과

12. 기타 특기사항

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9호서식] <신설 2009·2·24, 개정 2014·9·12>

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(제13조 관련)

신고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위치			주차장의 형태	
착공일			규모	대
설치완료일			기타	

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인)

이천시장 귀하

- ※ 구비서류 1. 주차장 설치후 현장사진 2매  
2. 정산서 및 청구서 1부

[별지 제10호서식] &lt;신설 2009·2·24, 개정 2014·9·12&gt;

## 주차장관리카드(제15조 관련)

1. 설치자 인적사항					
주 소		성 명		생년월일	
2.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					
설치장소		주차시설	<input type="radio"/> 기존시설 : <input type="radio"/> 보조금지원시설 :	대	대
주차형태	평행, 직각, 대문철거, 경계, 담장철거, 기타( )		공사기간	~	
총설치비용	원	자비부담	원	보조금지원	원
사용실태 점검					
점검일시	점검내용	조치내용	담당자	팀장	과장